



제주특별자치도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정부 사회적거리두기 추가 연장 방침에 따른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3.15.~3.28.) 운영계획 일림

1. 정부는 거리두기 체계 개편* 前, 전국 확진자 추세가 안정화 되지 않음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당분간 유지(3. 15.~ 3. 28.)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3차 유행이 안정화되는 시점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을 보류할 방침

2. 이에 따른 우리 도의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 부서 및 단체에서는 소관 사회복지시설에 안내하여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 5인 부터의 사적모임 예외규정 확대, 유흥시설 영업시간 제한 해제 등

붙임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계획 1부. 끝.

제주특별자치도



수신자 노인장수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서귀포시장(노인장애인과장), 제주시장(노인장애인과장), 제주시장(기초생활보장과장), 제주시장(여성가족과장), 서귀포시장(주민복지과장), 서귀포시장(노인장애인과장), 서귀포시장(여성가족과장),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장,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장

주무관 김종욱 복지정책팀장 오영한 복지정책과장 양인정 보건복지여성 전결 2021. 3. 15. 국장 임태봉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4249 (2021. 3. 15.) 접수

우 631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연동) / <http://www.jeju.go.kr>

전화번호 064-710-2812 팩스번호 064-710-2819 / monghanja@korea.kr / 대국민 공개

"친절매너, 질서지키기, 클린 제주만들기"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정신** 제주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추가 연장 방침에 따른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운영계획

2021. 3.

Jeju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목 차

1. 상황 분석	1
2. 운영개요	2
3. 운영계획	2
① 집합·모임행사분야	2
② 마스크 착용 의무화	4
③ 관광·여행 분야	4
④ 스포츠 관람	5
⑤ 대중교통	5
⑥ 다중이용시설	5
⑦ 국·공립 시설	10
⑧ 사회복지시설	10
⑨ 종교시설 및 활동	11
4. 지도·점검체계	11
5. 참고사항	13
참고1. 주요 시설(분야)별 비교표(3.15/3.1)	13
참고2. 5인 부서의 사적모임 금지 예외사항	14
참고3. 시설(분야)별 소관(단속)부서	34
참고4.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예외사항 등	36
참고5. 시설(활동)별 핵심 방역수칙	37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추가 연장 방침에 따른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운영계획

- 정부는 전국 확진자 추세가 안정화되지 않음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당분간 유지(수도권 2단계 / 비수도권 1.5단계)하기로 결정
 - * 정부는 3차 유행이 안정화되는 시점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을 보류할 방침
- 다만,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생업 및 일상의 제약이 지나치게 누적된 점을 고려, 일부 방역조치는 완화하여 적용할 계획
 - * 5인 부서의 사적모임 예외규정 확대, 유흥시설 영업시간 제한 해제 등

1 | 상황 분석

-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1월 중순(1.17~1.23, 4주차 384명) 이후 약 8주 간 400명 전후로 발생하며, 뚜렷한 감소세 없이 정체 상태
 - * 다만, 전체 확진자의 75% 이상이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등 수도권 상황이 엄중

권역	단계	주간 일평균 확진자 발생 현황					비고
		2월2주 (2.7-2.13)	2월3주 (2.14-2.20)	2월4주 (2.21-2.27)	3월1주 (2.28-3.6)	3월2주 (3.7-3.12)	
전체		353.1	454.9	369.4	371.7	420.5	
수도권	2	281.6	336.9	279.7	294.6	312.2	
비수도권	1.5	71.5	118	89.7	77.1	108.3	
제주	1.5	1.7	1.6	1.6	2.9	2.5	

- (제주상황) 최근 거리두기 단계 완화(2→1.5, '21.2.15) 이후 개인 간 접촉에 의한 확진자 발생이 다시 증가하는 양상
 - 특히, 단계 완화 이후('21.2.15~3.11, 25일간) 발생한 57건의 확진자 추이를 분석한 결과, 조사 중인 8건을 제외한 49건 모두가 개인 간 접촉에 의한 확진 사례로 확인되는 등 지나친 방역이완 분위기를 경계할 필요

< 거리두기 단계 완화(2.15) 이후 확진자 발생 동향 >

구분	계	해외방문	타지역 방문	타 지역 확진 자 접촉	도내 확진 자 접촉	시설별 집단감염	확인중
2.14	547	34	28	42	124	282	37
3.12	604(+57)	34(-)	30(+2)	56(+14)	157(+33)	282(-)	45(+8)

2 | 운영개요

- (단계조정)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2주간 연장
- (처분기간) '21. 3. 15(월) ~ 3. 28(일)

※ 정부는 수도권외 3차 유행 상황 및 백신접종 등이 안정화되는 시점까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시점을 당분간 보류하겠다는 방침

- (처분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전 도민 및 방문객(관광객 포함)
- (주요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 일부 조정 적용

3 | 운영계획

1] 집합·모임·행사 분야 (예외적용 확대)

- (적용대상) 예외사항을 제외한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부터의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 모임·행사 및 장소
⇒ “5인 부터 사적 모임 금지” 적용

- (5인 이상 금지 사적 모임 사례) 동창모임(동문회), 친구모임, 동호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카페, 정모 등과 같이 친목 형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모임·행사

* 돌잔치전문점에서 진행하거나 직계가족(8명 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구성원만의 모임으로서 하는 돌잔치의 경우 예외적으로 금지대상에서 제외

- (예외사항) 5인 부터 사적 모임 금지 예외 대상은 '제주형 방역수칙' 적용

①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단, 8명까지 가능)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사적모임'은 영유아*를 포함하여 8인까지 모임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영유아가 아닌 사람은 4명까지만 모임 가능

*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의한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단, 8명까지 가능)

② 결혼식, 장례식의 경우 5인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예외

- 결혼식·피로연은 이벤트당, 장례식은 1일 기준 누적 499명까지 행사, 시험 등의 경우 5인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예외

- 1.5단계의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 하에 499명까지 가능

▲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워크숍 등

▲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단, 500인 초과 시 방역관리계획 수립 후 지자체 협의 필요(공공주관은 생활방역위원회 심의)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 행사 중 집회·시위, 축제, 대규모 콘서트(대중음악), 학술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제한

④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허용

⇒ 500명 미만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인원 초과 필요 시 소관부서 협의 후 진행

⑤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집합금지 대상 시설은 아니나, 종목의 특성상 5인이상 모일 수 밖에 없는 스포츠의 경우 사실상 운영이 어려웠던 시설

* 등록된 실내·외 시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하는 경우

- 다만 경기 이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여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⑥ 기타 정부가 지정한 5인부터 사적 모임 금지의 예외사항 등

※ 5인 부터 사적 모임 금지와 관련한 자세한 예외 사항은 붙임 Q&A(정부안) 참조

- (위반 시) 5인부터 사적 모임 강행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감염병 예방법에 근거한 과태료 또는 고발 및 손해배상 등 구상권 청구 가능

②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유지)

- 감염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유지

구분	대상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 전체 · 실외 :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 * 단, 일부 시설(활동)의 경우 마스크 착용 예외 적용(별첨)

③ 관광·여행 분야 (조치 유지)

-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에 대한 객실 이용 제한은 해제 하되,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는 유지

* 관광진흥법상 숙박시설, 공중위생법상 숙박업소, 농어촌민박, 외국인도시민박업 등

⇒ 개인의 방역 행동 수칙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시설별 수칙과 별도로 항시 적용

○ 숙박시설 파티 관련

- (의무사항) 숙박시설 주관·주최·연계 파티 금지*, 행사 및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및 행사·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 안내문 게시, 로비 등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안내 등

* 연말연시 파티, 바비큐 파티, 클럽 파티, 게스트하우스 파티 등

- (권고사항) 개인 주최하는 행사·파티 금지 강력 권고

4] 스포츠 관람 (조치 유지)

- 관중 수용범위 내에서 30%까지 입장 허용 등 제한적 운영

5] 대중교통 (조치 유지)

-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 내 대중교통(버스·택시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항 유지, 이용 중 음식 섭취 금지(단,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항공기 및 선박(국제선 제외)은 이용 중 음식 섭취 금지(단,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권고

6] 다중이용시설 (일부 조정)

- (조정 사항) 유흥시설 영업시간 해제 등 일부 방역수칙 조정
-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상 주요 핵심 방역수칙 현황

< 5인 부터의 사적 모임 관련 다중이용시설 준수사항 >

관리자·운영자 수칙	참석자 수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이례 사항 모두 준수 ① 5인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입장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 ② 시설 내 이용객이 5인 이상 모여 있는 경우나 5인 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사적 모임인지 확인 ▶ 위 ①, ②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외)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등 예외사항 시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 금지

< 중점·일반·기타 시설별 주요 핵심 방역수칙 >

구분	대상 시설	주요 핵심 방역수칙
전 업종 공통적용 수칙		5인 부서의 동반입장 및 예약 금지 적용 마스크 착용(안내 포함), 1일 2회 이상 환기·소독, 전자출입명부 활용 의무화(제주안심코드 등) * 단, 불가피한 경우만 수기명부 병행 사용
	유흥시설 4종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삭제)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핵심 방역수칙은 「참고 5」 참조
중점 관리 시설 (12종)	콜라텍	(삭제)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삭제) 춤추기 금지(댄스홀/댄스 플로어 운영 금지) (추가) 음식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제외) (추가)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시 마스크 착용, 다른 무도행위 하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 ◆ 핵심 방역수칙은 「참고 5」 참조
	출뎀펍	(삭제)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핵심 방역수칙은 「참고 5」 참조
	파티룸	변동 사항 없음 ◆ 핵심 방역수칙은 「참고 5」 참조
	직접판매홍보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에 따라 무료체험 등으로 판매를 유도하 는 장소 포함	변동 사항 없음 ◆ 핵심 방역수칙은 「참고 5」 참조
	노래연습장	변동 사항 없음 ◆ 핵심 방역수칙은 「참고 5」 참조

구분	대상 시설	주요 핵심 방역수칙
전 업종 공통적용 수칙		5인 부터의 동반입장 및 예약 금지 적용 마스크 착용(안내 포함), 1일 2회 이상 환기·소독, 전자출입명부 활용 의무화(제주안심코드 등) * 단, 불가피한 경우만 수기명부 병행 사용
중점 관리 시설 (12종)	실내 스탠딩 공연장	변동 사항 없음 ◆ 핵심 방역수칙은 「참고 5」 참조
	사우나·찜질방 등 목욕장업	변동 사항 없음 ◆ 핵심 방역수칙은 「참고 5」 참조
	식당·카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무인카페 포함)	변동 사항 없음 ◆ 핵심 방역수칙은 「참고 5」 참조
일반 관리 시설 (17종)	돌잔치 전문점(추가) * 사적모임 금지대상 중 돌잔치가 해제된 것은 아니며, 돌잔치 전문점에 한해 '예외 허용'	(신규)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운영자가 상주하고 있는 식품위생법령상 <u>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시설로서 돌잔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 하는 사업장을 의미하며, 돌잔치 외 다른 목적 으로도 이용되는 음식점, 상설뷔페, 호텔, 예식장, 파티룸 등의 시설은 제외</u> ◆ 핵심 방역수칙은 「참고 5」 참조
	결혼식장·피로연	변동 사항 없음 ◆ 핵심 방역수칙은 「참고 5」 참조
	장례식장	변동 사항 없음 ◆ 핵심 방역수칙은 「참고 5」 참조

구분	대상 시설	주요 핵심 방역수칙
전	업종 공통적용 수칙	<p>5인 부터의 동반입장 및 예약 금지 적용 마스크 착용(안내 포함), 1일 2회 이상 환기·소독, 전자출입명부 활용 의무화(제주안심코드 등) * 단, 불가피한 경우만 수기명부 병행 사용</p>
		일반 관리 시설 (17종)
<p>독서실· 스터디카페</p>	<p>변동 사항 없음 ◆ 핵심 방역수칙은 「참고 5」 참조</p>	
<p>실내 체육시설 *기원 실내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가상체험시설, 당구장, 실내 골프연습장(스크린 포함), 볼링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업 탁구장 등</p>	<p>변동 사항 없음 ◆ 핵심 방역수칙은 「참고 5」 참조</p>	
<p>사설 스포츠시설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은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등</p>	<p>변동 사항 없음 ◆ 핵심 방역수칙은 「참고 5」 참조</p>	
<p>PC방</p>	<p>변동 사항 없음 ◆ 핵심 방역수칙은 「참고 5」 참조</p>	
<p>영화관·공연장</p>	<p>변동 사항 없음 ◆ 핵심 방역수칙은 「참고 5」 참조</p>	
<p>아미용업</p>	<p>변동 사항 없음 ◆ 핵심 방역수칙은 「참고 5」 참조</p>	

구분	대상 시설	주요 핵심 방역수칙
전 업종 공통적용 수칙		5인 부터의 동반입장 및 예약 금지 적용 마스크 착용(안내 포함), 1일 2회 이상 환기·소독, 전자출입명부 활용 의무화(제주안심코드 등) * 단, 불가피한 경우만 수기명부 병행 사용
일반 관리 시설 (17종)	오락실·멀티방 등	변동 사항 없음 ◆ 핵심 방역수칙은 「참고 5」 참조
	유원시설업	변동 사항 없음 ◆ 핵심 방역수칙은 「참고 5」 참조
	놀이공원·워터파크	변동 사항 없음 ◆ 핵심 방역수칙은 「참고 5」 참조
	피부미용업 ·마사지샵	변동 사항 없음 ◆ 핵심 방역수칙은 「참고 5」 참조
	백화점·대형마트· 종합소매업(상점·마트)	변동 사항 없음 ◆ 핵심 방역수칙은 「참고 5」 참조
기타 시설	전통시장	변동 사항 없음 ◆ 핵심 방역수칙은 「참고 5」 참조
	실외 골프장	변동 사항 없음 ◆ 핵심 방역수칙은 「참고 5」 참조
	콜센터	변동 사항 없음 ◆ 핵심 방역수칙은 「참고 5」 참조
	유통물류센터	변동 사항 없음 ◆ 핵심 방역수칙은 「참고 5」 참조
	그 외 실내·외 시설	■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공통수칙 준수 권고